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21호

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

「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2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조례명** :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이용수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이용수 의원, 곽봉호 의원**

3. **제정이유**

○ 옥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**주요골자**

○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○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○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○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(안 제6조)
○ 지원사업(안 제7조)
○ 복지단체의 보호 · 육성(안 제8조)
○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○ 교육 · 홍보(안 제10조)

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42, FAX 733-9225)

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붙임 1.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2. 의견서 1부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종합복지서비스”란 국가, 충청북도, 옥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・재활・교육・직업훈련・고용・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.
4. “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(이하 “복지단체”라 한다)”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

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 이라 한다)을 4년마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·홍보
3.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4.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)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

형・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사업)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
2.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
3.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
4. 법 제25제2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 사업
5.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・예술・여가・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
6.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,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
7.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
8.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
9.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복지단체의 보호・육성)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・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, 그리고 교육기관, 의료기관, 사법기관 등 관련기

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교육·홍보)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지역신문, 유선방송,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생년월일 :

○ 주　　소 :

○ 연 락 처 :
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고